등 교 허 가 증 명 서 (지바시판) 2019 년 4 월개정

초등・중학교　　년　　반　이름

증명일 :　　년　　월　　일

아래 질환으로 요양중、현재 회복하여 등교해도 좋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_____년_____월_____일부터 요양개시

_____년_____월_____일부터 등교가능

○인	질환명	출석정지기간의 기준 ※다음 기준을 근거로 해 주치의가 판단한다.
	홍역	열이 내린 후 3 일을 경과할 때까지
	백일해	특유의 기침이 소실될 때까지 또는 5 일간 적정한 항균성물질제제에 의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이하선(귀밑샘), 악하선(턱밑샘), 설하선(혀밑샘)의 종창이 발현한 후 5 일을 경과하며 또한 전신상태가 양호해질 때까지
	풍진	발진이 소실될 때까지
	수두	모든 발진에 딱지(가피화)가 형성될 때까지
	결핵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인두결막열(수영장결막열)	주요 증상이 사라진 후 2 일을 경과할 때까지
	수막염균성 수막염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장관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급성 출혈성 결막염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A 군 용련균 감염증	항생제 내복 개시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해, 발열, 발진 등의 모든 증상이 회복할 때까지
	바이러스성 간염(A 형)	간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감염성 위장염	구토, 설사 증상이 호전되고 전신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열이 내리고 기침이 호전될 때까지
	기타 감염증 (　　)	
이하의 질환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지도하에 필요에 따라 출석정지한다. 결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등교허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전염성 홍반	발진기에는 감염력이 없어서 전신상태가 좋은 사람은 등교가능
	헤르판지나	전신상태가 안정된 사람은 등교 가능
	수족구	전신상태가 안정된 사람은 등교 가능
	전염성 농가진	환부를 보이지 않도록 감싸고 있으면 등교 가능, 환부를 보이지 않도록 감싸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가피(딱지)가 없어질 때까지

※　학교생활에서의 주의사항

(　　)

◆ 계절성 인플루엔자 발병 후 등교허가서의 취급에 관해서는 보호자기입의 「요양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 년 11 월 1 일~) 인플루엔자와 다른 학교감염증을 같이 앓고 있을 경우는「기타 감염증」란에「인플루엔자도 같이 앓고 있음」이라고 기입해 주십시오.

의료기관명

의사명　　인

(작성협력 : 지바시의사회、지바시교육위원회、지바시양호교사회)